

결 정

2018 - 1059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전민일보 발행인 임 석 주
2. 湖南日報 발행인 김 덕 천

주 문

전민일보 2018년 2월 7일자 12면 「라이벌 고다이와 비교하지 말아 달라」
 기사의 관련 사진, 湖南日報 2월 7일자 1면 「삼지연관현악단 태운 만경봉-92호
 목호항 입항」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

전민일보 2월 7일자 12면



湖南日報 2월 7일자 1면

전민일보는 뉴시스가 2월 6일 14시00분에 전송한 「입춘하는 이상화」 제목의
 사진을,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2월 6일 16시56분에 전송한 「삼지연관현악단 태운
 만경봉-92호 목호항 입항」 제목의 사진을 각각 전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

다.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	김 용 담	김용담
위 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박 재 현	박재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.